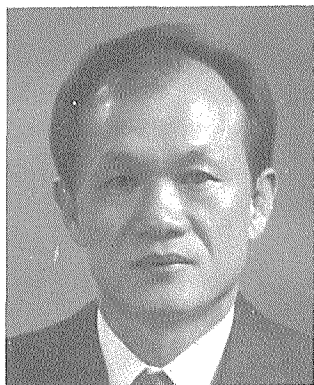


'90년대 중반의 LPG 및 가스안전 정책 방향



권 태 윤
 <상공자원부 가스관리과장>

1. LPG가격관리

정부가 LPG의 최고판매가격을 고시하여 가격을 관리하는 궁극적 목표는 국민의 생필품이 된 LPG를 저렴하고 안정된 공급을 통해 국민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에너지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유도하는데 있다. 그동안 정부는 초기 관련산업의 육성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수급기반 조성을 위하여 에너지자원의 저가정책을 유지하여 왔다. 경제가 발전함에 따라

경제의 민간주도 및 지속적인 가격의 자유화 추세에도 불구하고 경유, B-C유, 연탄등과 함께 마지막 남은 정부의 가격관리대상 품목인 LPG도 최근에는 가격자유화의 필요성에 대해 정부와 업계등에서 활발히 논의되고 있다.

정부가 LPG 가격을 관리함으로써 발생하는 문제점은 민간기업의 손익 및 소비자가격 결정에 정부가 직접 개입함으로써 LPG 수입사의 국제경쟁력 배양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유통과정에서 경쟁원리가 적용되지 못해 적절한 가격형성과 에너지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저해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LPG 가격정책은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여 LPG 산업의 발전 및 자원의 효율적인 배분을 얼마만큼 달성하느냐가 그 핵심이다.

우선 가격관리제도의 변천을 보면 1964년 5월 대한석유공사 울산정유공장의 가동으로 LPG가 생산됨에 따라 이의 공장도가격을 고시가로 한 정부고시 고정가격제를 실시하였고 1972년 7월 전국 균일수송비제의 도입으로 최종 소비자가격까지 결정하는 정부고시최고가가격제도를 도입하였으며, 1988년 6월에는 수송비의 별도고시제를 폐지, 1991년 5월 가격조정시 일부 도서지역등에 만 시·도시사가 별도로 결정, 고시할 수 있도록 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1992년 6월 가격조정시에는 공장도가격중 도시가스원료용 LPG가격을 프로판가격 대비 80% 수준에서 90% 수준으로 조정하여 LPG의 용도에 따른 가격의 형평성을 최대한 유지토록 하였으며 유통단계별 수수료도 일부 현실화하여 LPG 유통산업의 육성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였다.

앞으로의 LPG 가격정책방향은 다음 몇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먼저 가격자유화문제로서 지금은 주로 유가자유화의 일시 실시에 따른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그 전단계로서 유가연동제가 검토되고 있다. 유가연동제란 국제원유가격 및 환율등 원가요소의 변동에 따라 자동적으로 국내 기준유가가 결정되는 제도로서 경제의 개방화·자유화추세에 맞춰 동 제도의 도입필요성이 논의되고 있다. 그러나 LPG는 국내 생산보다 수입존도(65%)가 크고 원유가 변동과 LPG가격의 변동폭이 서로 상이하어 LPG가격을 원유가에 연동시킬 경우 정확한 원가반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LPG 국제가격은 주로 성수기인 월동기에 대폭 상승되므로 LPG 가격이 높게 결정되는 반면, 상대적으로 LNG가격은 안정을 유지함으로써 서민의 부담만 증가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LPG의 유가연동제는 당장 실시하기 보다는 수급기반등 제반 국내여건을 조성하고 시장원리 도입의 타당성을 충분히 검토한 후 실시시기를 결정해야 한다고 본다.

다음은 LPG 조세정책방향에 대해 살펴 보겠다. LPG 원가구성요인중 도입부대비의 비중이 타 에너지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아 원가상승요인이 되고 있다. 도입부대비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특별소비세로서 이미 대중화 되어 서민생활품이 된 LPG에 특별소비세를 부과하는것은 조세목적상 불합리하고 LNG에는 부과되지 않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조세형평에도 맞지 않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LPG 특별소비세를 폐지하여 소비자가격의 인상요인 흡수 및 물가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끝으로 LPG 유통산업의 건전한 육성 또한 가격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이다. 최근 인건비 상승등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해도 정부에서 최고판매가격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한 가격인상요인을 적시에 반영하지

못해 LPG 유통산업의 경영이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소비자물가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하여 유통단계별로 적정마진을 산정, 단계적으로 현실화하여 LPG 유통산업의 경영개선을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결국 LPG 가격정책의 핵심은 국내외 LPG 시장의 현실여건을 감안하면서도 가능한 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여 LPG 가격이 합리적으로 결정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LPG의 안정공급 및 LPG 유통산업의 건실한 발전을 기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가격제도를 도입, 운영하는 것으로서 이를 위한 정부의 정책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본다.

2. LPG수급관리 및 유통구조 개선

(1) 수급관리

국내 LPG 수급은 기본적으로 지속 증가되는 수요에 국내 원유정제 또는 석유화학 부산물에 의한 생산물량으로 우선 공급하고 부족물량은 사우디등 산유국과 장기계약위주의 수입계약을 체결, 냉동 LPG의 도입으로 충당하고 있다. 지난5년간 연평균 20% 이상의 높은 수요증가에 비해 국내 생산은 연평균 8% 증가에 그쳐 수입 비중이 65% 내외로 증대되었고 이로 인해 수입수요물량의 안정확보 및 적기 도입이 국내 수급안정에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1993년 현재 LPG 장기수입계약 총물량 3백79만톤 전량이 도입선이 중동지역이고 특히, 사우디의 비중이 약 72%에 달하고 있어 지난 걸프전쟁시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동정정의 변동에 국내 수급이 큰 영향을 받는 취약성을 내포하고 있는바, 전국 가구의 약 70%가 취사 또는 난방용으로 사용하는 민생필수 연료인 LPG의 안정공급 보장을 위하여 LPG 비축을 추진하여 왔다.

정부비축으로는 1989년말 160천톤 규모의 평택 L-1 비축기지를 완공, 총 11만2천톤(프로판 89천톤, 부탄 23천톤)의 비축물량을 확보·저장중이며 1996년까지 200천톤 규모의 추가시설을 건설하여 정부비축목표인 수입수요 30일분의 비축수준을 달성, 유지해 나갈 계획이고, 민간 비축으로는 LPG 수입사의 정상적인 운영재고외에 최저 재고기준을 함께 적용하여 20일분 내외의 비축수준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한편, 수입물량의 증가에 대처하고 수도권외의 수급원활화를 위하여 수도권 인근지역에 16만톤내의 규모의 신규 민간수입기지를 1996년까지 건설할 수 있도록 소요자금융자등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민간 수입기지의 확충이전에는 비축물량의 대여방출, 교환비축·출하등 정부 비축기지(L-1)의 효율적인 활용으로 국내 LPG 수급원활화를 기할 방침이다. 또한, LPG 수급관리상 장애요인이 되어온 프로판과 부탄간의 수급구조 불균형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 소형경량용기(10kg 내외 용량)에 의해 가정취사용 프로판 대신 부탄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가격구조 및 사용시설의 보완을 통하여 철강, 요업등 산업연료용의 부탄수요를 확대하며, 차량용 부탄수요도 공해저감, 에너지절약 등 공익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부문에 대하여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2) LPG 유통구조의 개선

그동안 LPG 용기 안전관리 및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추진해온 용기의 소유·관리 일원화 계획(“용기보증금제도”)은 약 1천2백만개나 되는 유통 용기에 대한 보증금증서 발급, 충전사업자의 용기자산관리 등의 어려움으로 현실적으로 추진이 곤란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가스안전 확보 및 소비자 보호측면에서 별 문제점이 없고 이미 정착단계에 있는 용기 관리 일원화(폐용기개체, 재

검사, 용기매매등 용기관리일체를 충전소가 전담)로 이를 대체할 예정이다.

한편, 다수의 가스소비자가 밀집되어 있는 공동주택, 상가건물등에 대하여는 개별용기 및 호스대신 소형저장탱크 또는 집합용기와 배관에 의해 LPG가 일괄 공급될 수 있도록 하고, 산업체등 대량 수요처에 대한 벌크로리에 의한 공급도 크게 확대될 수 있도록 가스안전관리기금 융자등 자원시책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캐비닛히터용 부탄용기와 가정취사용 부탄공급을 위한 소형경량용기는 현행 판매소의 배달판매체제외에 소비자가 직접 판매소에서 저가로 구입·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배달인력난 해소 및 소비자부담경감을 도모하고, 사용도중 가스가 떨어지는 소비자 불편의 해소와 효율적인 계획배달제의 확립을 위하여 복수(Twin)용기의 설치·활용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3. 가스안전관리

가스시설현황은 1992년말 현재 법정검사대상시설로 제조·충전시설 4천8백73개소, 판매·집단공급시설 5천9백73개소, 저장·사용시설 10만2천4백55개소등 총 10만2천3백55개소가 있고, 이외에 비검사대상인 가스사용 가정 1천72만가구 및 요식업소 약 25만개소가 있으며, 고압가스 및 이틀 시설

'93 LPG 수급계획

		1992(실적)		1993(계획)	
			전년대비 %		전년대비 %
수	요	4,626	27.2	5,242	13.3
공	급	4,639	21.0	5,321	14.7
-생	산	1,448	21.9	1,885	30.2
-수	입	3,191	20.6	3,436	7.7
(수입비중)		(68.8)		(64.6)	
프	수	2,851	20.0	3,329	16.8
로	공	2,852	15.7	3,367	18.1
관	-생	409	23.9	525	28.4
	-수	2,443	14.4	2,842	16.3
부	수	1,775	40.8	1,913	7.8
탄	공	1,787	30.5	1,954	9.3
	-생	1,039	21.1	1,360	30.9
	-수	748	46.4	594	△20.6

은 사소한 부주위와 경미한 결함에도 순간적으로 대형사고를 일으켜 불특정 다수인에게 막대한 인명피해 및 재산피해를 유발하는 특성을 가진 고압가스는 제조로부터 유통·사용단계에 이르기까지 체계적인 안전관리가 필수적인 것이다.

현행 가스안전관리제도는 고압가스안전관리에 관한 일반법으로 일반 고압가스 취급 및 용기등의 안전관리 사항과 타법령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안전관리 공통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LPG 충전·판매·저장·사용 및 가스용품의 안전관리와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 도시가스의 공급·사용 및 관련시설시공등의 사업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도시가스사업법등 가스관계 3개 법령과 세부기술기준 및 시설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2백여개의 고시로 이루어져 있으며, 가스안전관리체계는 제도 및 정책의 수립·입안·운행을 담당하고 있는 상공자원부 가스사업의 허가·신고업무와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각 시·도, 법령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 기준의 제정을 위한 조사·연구업무와 가스안전관리에 관한 교육·홍보업무 및 가스시설의 완성검사와 정기검사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가스안전공사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검사기관·공인검사기관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사업자는 수요자시설에 대한 안전점검과 자기시설에 대한 자체검사 및 자체 안전관리규정의 제정과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산업의 급속한 발전, 국민생활수준의 향상 및 청정연료인 가스에 대한 선호경향등으로 가스소비가 급증하고 가스사용기기 및 용도가 복잡·다양화됨에 따라 가스사고가 날로 증가·대형화되고 있어 가스안전관리에 대한 국민적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가스사고로 인한 각종 위해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항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가스안전관리에 철저를 기해나갈 계획이다.

가스사용취약시설 밀집지역인 시장·상가아파트·지하상가등에 대한 점검활동을 강화하여 용기육내보관사용, 노후가스시설 방치로 인하여 대형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는 한편 대형가스시

설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아파트·연립주택·다가구주택등에 대한 개별용기사용억제, 충전시설의 자동화 및 대형화 유도, 소형용기에 의한 부탄가스 보급확대 방안을 검토하는등 LPG 공급방법과 유통구조를 점차적으로 개선하며, 또한, 무자격자에 의한 가스보일러등의 시공근절, 가스보일러시공자에 대한 교육강화로 가스중독사고를 예방하고, 관계법령의 정비·제도개선·기술개발등 가스안전관리제도의 미비점 보완에 노력을 경주하며, 특히 가스사고는 과반수이상인 가스사용자의 취급부주의에서 기인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가스안전은 무엇보다도 가스사용자, 즉 국민 개개인의 빈틈없는 안전의식과 주의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만큼 교육·홍보에 역점을 두어 추진할 것이다.

아울러, 행정관청 및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중심이 된 관 주도형의 타율적 안전관리체제를 민간 및 업계 중심의 자율적 안전관리체제로 조기 전환할 수 있도록 그 기반구축에 행정의 지원을 아끼지 않을 방침이다.

4. 규제완화

경제 행정규제완화방안의 일환으로 가스분야에 있어서도 각종 규제의 전반적인 완화추진으로 관련업계의 부담감소와 사용자의 편의성 제고를 도모할 계획이다.

현재, 가스관계법령의 개정을 통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항들중 중요한 것만 간추려보면,

- 가스사업자의 안전관리자 의무고용인원을 시설종류에 따라 2~4인에서 1~3인으로 줄이고 안전관리자 양성교육을 확대 실시하며,
- 비교적 위험성이 적은 일정규모 이하의 냉방용 고압가스 냉동제조시설은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전환하고, 배관을 통하여 일반 수요자에게 LPG를 공급하는 경우 사용가구수에 관계없이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용가구수가 70세대이상인 때에만 집단공급사업허가를 받도록 하며,
- 고압가스용기중 내용적 500ℓ 미만인 이음매없는 용기는 매3년마다 재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을 제조후 최초 재검사에 한하여 4년 경과후 재검

사를 받도록 하고 에어졸용 용기와 가정용 액화 석유가스용기의 철관두께기준을 재질항상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인 수준으로 완화함과 아울러

- 가스사용신고를 받은 허가관청이 신고사항을 한국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하여 동 공사가 민원인의 별도신청없이 완성검사를 실시토록 함으로써 민원인의 불편을 경감시킬 예정이다.

또한, 가스관련업체가 가스관계법령외에 산업안전보건법, 소방법등 타법령에 의한 안전관리자 채용, 시설점검 및 검사등으로 중복규제라는 의견이 제기되고있어 현재 제정추진중인 기업활동 활성화를 위한 특별법에 이를 최대한 반영, 관련업체부담이 경감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5. 맺는말

이상 LPG 및 가스안전정책분야별로 그간의 추진

상황을 정리·평가해보고 '90년대 중반에 걸쳐 추진되어야 할 주요 정책과제들을 열거하였다.

지금부터 앞으로 수년간은 LPG 산업에 있어서 전국배관망의 확충에 따라 급속히 공급확대될 LNG와의 위상관계 정립에 매우 중요한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LPG 산업이 LNG등 타연료와 경쟁력을 유지하며 적절한 보완관계를 가지고 건전한 발전을 계속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공급안전성을 확보하고, 소비자에게 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연료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하며, LPG의 특성을 최대한 살리는 다각적인 수요개발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위 정책과제들의 추진에 업계종사자, 관련단체등의 적극적인 협조가 있기를 기대해 본다. ♣

제품 수송수단

선박의 종류

1) 운송형태에 의한 분류

- 원유선 (Crude TANKER) : 원유를 수송하는 선박
- 제품선 (Product TANKER) : 나프타, 휘발유, 항공유, 등유, 경유 경질중유, 중유, B-C유 등의 제품을 수송하는 선박
- 석유화학제품선 (Chemical TANKER) : 방향족제품, 석유화학제품 등을 수송하는 선박
- 엘피지선 (LPG CARRIER) : 프로필렌, 프로판, 부탄 등 액화가스를 수송하는 선박

2) 적재중량톤수 (Dead Weight Ton)에 의한 분류

- GP (General Purpose) 급 선박 : 24, 999DWT 이하

선박

- MR (Medium Range) 급 선박 : 25, 000 ~ 44, 999 DWT 선박
- LR1 (Large Range 1) 급 선박 : 45, 000 ~ 79, 999 DWT 선박
- LR2 (Large Range 2) 급 선박 : 80, 000 ~ 159, 000 DWT 선박
- VLCC (Very Large Crude Oil Carriers) : 160, 000 ~ 319, 999DWT 선박
- ULCC (Ultra Large Crude Oil Carriers) : 320, 000 DWT 이상선박